

신발 디자인의 등록 무효심판 - 공지 선행디자인의 결합으로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

부 판단: 특허법원 2022. 4. 7. 선고 2021허3932 판결



1.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비교

구 분	이 사건 등록디자인	선행디자인들
사시도		 <p data-bbox="1038 1509 1217 1538"><선행디자인 1></p>

정면도		  <p data-bbox="1038 801 1219 835"><선행디자인 3></p>  <p data-bbox="1038 1361 1219 1395"><선행디자인 4></p>
배면도		
좌측면도 /우측면도		
평면도		
저면도		

2. 등록무효 심판청구인의 주장요지

- (1)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를 주 선행디자인으로 선정한 다음, 여기에 선행 디자인 1의 갑피부 + 선행디자인 3의 쿠션부 및 바닥창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

할 수 있음

- (2) 주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4의 탄성밴드 + 선행디자인 3의 쿠션부 및 바닥
창 결합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음

3. 용이창작 판단기준 법리

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(이하 '공지디자인'이라고 한다)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위 규정의 취지는, 공지디자인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(이하 '공지형태'라고 한다)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(이하 '주지형태'라고 한다)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,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·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,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·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

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.

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·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,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,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,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).

4. 구체적 판단 요지

(1) 특허심판원 심결 - 용이창작성 인정, 디자인등록 무효 심결

(2) 특허법원 판결 요지 - 심결유지

차이점 관련하여, 신발코 부분의 세로 길이 또는 넓이의 차이, 신발 앞부분의 중창에 형성된 형상의 차이, 안창 뒷부분의 높이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대상 물품을 자세히 볼 때

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·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.

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① 선행디자인 1을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3과 선행디자인 4를 결합하거나, ② 선행디자인 4를 주 선행디자인으로 하여 이에 선행디자인 1과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.

첨부: 특허법원 2022. 4. 7. 선고 2021허3932 판결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service, A~Z 수행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